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14.11.4.>

행정박물 관리대상(제57조제1항 관련)

유 형	범 위
관인(官印)류	・국새(國璽) 및 기관장의 직인 등
견본류	·화폐, 우표, 훈장·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
상징류	·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, 기(旗), 휘호(揮毫), 모형, 의복,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
기념류	·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, 행사,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
상장·상패류	• 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
사무집기류	· 대통령,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
그 밖의 유형	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